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단5256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416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단5256566 판결

전문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생만, 정승교

변론 종결 2021. 5. 14.

판결 선고 2021. 6. 18.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203,741원 및 그 중 41,203,63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8,740,0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8,740,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1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등의 위 피고들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의제자백 판결(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청구취지 기재

'41,203,741원 및 그 중 41,203,63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과 변론종결일이 차례로 2020. 1. 17., 2021. 5. 14.이어서 48,740,054원으로 계산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의 영업 등

가) 피고 A은 2017. 6. 5. 화성시 D상가 E호, F호, G호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나) 피고 A은 2019. 5. 31. 위 슈퍼마켓을 폐업하였다.

2)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등

가) 원고는 2017. 9. 28. 피고 A과 '보증번호 1,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2. 9. 26.'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피고 A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등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상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 A이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신용불량등록(및 공공기록정보) 사유가 발생한 때, 가압류나 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때,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을 곤란한 때 또는 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을 기하여 2017. 9.경.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3) 원고의 대위변제 등

가) 피고 A은 2019. 6. 무렵 J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신용보증을 기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J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41,609,75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2. 피고 A으로부터 406,12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손해금율은 2018. 2. 1.부터는 연 10%이며, 위와 같이

회수된 406,120원에 대하여 회수일 기준으로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11원[= 406,120원 × 10% × 1(2019. 10. 22. - 2019. 10. 22.)/365]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등

가) 피고 A은 2005. 8. 1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8. 6.14. 압류해제 후 말소등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9.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9.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5. 8. 12. '채권최고액 1억 8,655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K은행, 등기원인 2005. 8. 12.자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6. 10. 2.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A, 근저당권자 K은행, 등기원인 2006. 10. 2.자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8. 9. 11.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등기원인 2018. 9.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5. 10.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다.

6) 신분관계 등

피고 C은 피고 A의 친동생 L의 전처(前妻)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친동생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을다 11,12호증, 을다 1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이 있을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거나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후에 실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 주었거나 또는 이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취소청구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다만 이 사건 설정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억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내로서 구상금채권에 상응하는 금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설정계약 이후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은 피고 A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설정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 피고 A, C은 이 사건 설정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적격 등에 관하여

가) 사전구상권도 사해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7호증, 을다 1호증의 1, 2, 을다2호증, 을다 14호증의 1 내지 3, 을다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등 일정한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는 점, ② 피고 A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J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설정계약과 이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이루어진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 A이 2016.7.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던 중 2017. 11.경 미지급원리금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 점, ⑤ 피고 A이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에 슈퍼마켓으로 사용하는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도 한 점, ⑥ 피고 A은 2018. 9. 11. 이 사건 설정계약이 있는 후 약 8개월이 도과한 2019. 5. 31. 슈퍼마켓을 폐업하였고 그 직후 2019. 6. 무렵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2019. 10. 22.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J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설정계약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폐업과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 A에게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설정계약 이후에도 슈퍼마켓을 계속 운영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이 사건 설정계약 이전인 2018. 6.14. 해제되었던 점, 원고는 2019. 9.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앞서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사전구상권 또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원고 또는 피고 C이 주장하는 피고 A의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 주요 재산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종류	가액(원)	종류	가액(원)
	적 극 재 산			
①	이 사건 부동산	380,000,000		400,000,000
②			임대차보증금(M)	30,000,000
③			임대차보증금(N)	60,000,000
④			임대차보증금(O)	70,000,000
⑤			재고품 등 유체동산	400,000,000
⑥			외상거래대금	200,000,000
⑦			P은행 예금	52,641,330
	소 극 재 산			
⑧	원고의 구상금채무	41,203,741		41,203,741
⑨	피고 C에 대한 채무	160,000,000		160,000,000
⑩	K은행 2004. 12. 1. 채무	80,956,000		86,727,591
⑪	K은행 2006. 10. 9. 채무	123,633,000		126,666,260
⑫	K은행 2016. 5. 30. 채무	34,500,000		
⑬	Q은행 2018. 4. 9. 채무	9,886,000		

나) 갑 7, 10호증, 을다 14호증의 1 내지 3, 을다 15호증의 각 기재, 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의 2019. 12. 27. 기준 매매가(K은행이 공시하는 일반평균가)가 3억8,000만 원인 사실, 피고 A은 슈퍼마켓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D상가 E호, F호, G호 점포를 차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M, N, O로 부터 임차하였는데 M에 대해서는 2019. 1. 10. 기준 1,31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O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

53,538,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다만 피고 A이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에도 N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을다 1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P은행에 2019. 1. 9.경 15,295,469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다가 입출금이 이루어져 많게는 약 1억 1,600만원의 잔고(단만 위 금액 속에는 M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1,3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렀으며 2019. 1. 16. 기준 52,641,330원의 예금잔고가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J에 2019. 10. 22. 이 사건 대출원리금 41,609,750원을 변제하고 406,1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한 원금이 41,203,741원(= 41,609,750원 - 406,120원)에 이르는 사실, 근저당권자가 피고 C인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억 6,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K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5. 8. 12. 채권최고액 1억8,655만 원, 2006. 10. 2.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등기의 2019. 10. 22. 기준 피담보채무가 차례로 80,956,000원, 123,63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16. 5. 30. K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2019. 10. 2. 기준 채무가 34,500,000원인 사실, 2018. 4. 9. Q은행으로부터 R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9. 10. 2. 기준 미지급 카드대금이 9,886,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위 나)항에서 확인되는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일응 446,638,000원(= 3억 8,000만 원 + 1,310만 원 + 53,538,000원)이고, 위 다)항에서 확인되는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일응 450,178,741원(= 41,203,741원 + 1억 6,000만 + 80,956,000원 + 123,633,000원 + 34,500,000원 + 9,886,000원)이다. 위 소극재산의 가액이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상회하지만 그 차액이 3,540,741원(= 450,178,741원 - 446,638,000원)이어서 비교적 소액이다. 위가액들 산정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설정계약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 A이 N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한데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 N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점, 피고 A이 P은행에 2019. 1. 9.경 15,295,469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 입출금이 이루어져 2019.

1. 16. 기준 52,641,330원의 예금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에도 예금잔고가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사정으로로써 피고 A이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설정계약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극재산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통상 슈포마켓 영업을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금원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A, C의 사해의사 여하 등 나머지 점에 대해 살피지 않더라도 위 2)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피고 C에게 가액반환으로서의 금원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C에게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권원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이 사건 설정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2019. 5. 10. 이미 말소등기되었으나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에 따라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행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내지 그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 자체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